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26일까지... 코로나 피해 152만명 직권 제외

국세청은 8일 2021년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안내에 나섰다.

개인 일반과세자(88만명)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3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인 경우 지난 4월부터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 152만명은 직권 제외된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오는 7월 확정신고 때 납부기한(7월 26일)까지 예정신고분까지 한 번에 납부하면 된다.

해외 앱 개발자, 해외기업 등이 직·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국내 전자적 용역을 제공할 경우 간편 사업자에 등록하고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올해 1~3월까지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고기한이 끝나면,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에 착수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중소기업 FTA 활용 돕는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전문교육을 4월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5년차인 이번 교육은 집합, 온라인, 수요자 맞춤형으로 3개 과정에 총 13개 세부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교육방식을 확대했다. 모든 집합과정에서 원격 화상교육 확대와 함께 원산지결정기준 과정

을 추가했으며, 품목분류(HS) 통칙 이해하기, 원산지관리 시스템(FTA-PASS) 사용하기 등의 2개 온라인과정을 신설했다.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는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전문교육은 전액 무료이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점수로 인정받는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문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총 550회 교육을 실시해 5486명의 원산지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했고, 234개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신규 활용하고 117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도록 지원했다.

상속세 신고·납부도 홈택스서 가능해졌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간 상속세를 제외하고 모든 세목(稅目)은 전자신고가 가능했다. 다른 세목에 비해 상속세 과세대상인 국민이 많지 않다는 이유가 컸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라 자산을 쌓아두고 있고,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오르며 상속세를 납부(공제액 초과로 인한)하는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국세청의 통계연보를 보면, 상속세 신고인원은 2015년 5452명에서 매년 꾸준히 늘었고 2019년엔 1만명(9555명)에 육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인원 증가에 따른 세정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전자신고 서비스를 상속세에도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신고 편의를 제고하고,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